

융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

5-1-72

규정번호	5-1-72
제정일자	2024.7.24
최근개정	2026.2.6
개정차수	1차
관리부서	융합교육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융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유전공 학부 및 학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자유전공학과 학생의 학과(전공)배정에 관한 사항
3.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(신설 2026.02.06.)
4. 센터 사업 기획·운영·평가·환류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2.06.)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(개정 2026.02.06.)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조교,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심의
2. 센터에 관련된 규정의 개폐 심의
3.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, 운영, 성과분석 및 환류 심의
4. 자유전공학과 학생의 학과(전공)배정 심의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대학혁신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각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.

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신설 2026.02.06.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2 융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

제4조의2(학생설계전공위원회) ①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교육지원센터장(이하 '센터장')을 당연직으로 한다

③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위촉직 위원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각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
2. 학생설계전공 설계안 심의

3. 승인된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 변경 심의

4. 기타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6.02.06.]

제5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3호·제4호·5호, 제4조제8항, 제4조의2)